

---

## Policy and Law Report \_Vol.164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28.~12.4.) -

*December 5,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p> <span style="color: purple;">● <u>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u></span> </p> <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고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하여 제시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 text-align: left; padding: 5px;">8대 실천원칙(요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b>1. 진정성(Authenticity)</b>                      (개념) 가상자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 ②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b>2. 자율성(Autonomy)</b>                      (개념)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행동·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b>3. 호혜성(Reciprocity)</b>                      (개념)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 지원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우호(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 실천 노력                 </td> <td style="padding: 5px;"> <b>4.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b>                      (개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자제 노력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b>5. 공정성(Fairness)</b>                      (개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 중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존중 노력                 </td> <td style="padding: 5px;"> <b>6.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b>                      (개념)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도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b>7. 포용성(Inclusiveness)</b>                      (개념)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정신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td> <td style="padding: 5px;"> <b>8.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b>                      (개념)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td> </tr> </tbody> </table>	8대 실천원칙(요약)		<b>1. 진정성(Authenticity)</b> (개념) 가상자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 ②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	<b>2. 자율성(Autonomy)</b> (개념)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행동·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	<b>3. 호혜성(Reciprocity)</b> (개념)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 지원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우호(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 실천 노력	<b>4.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b> (개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자제 노력	<b>5. 공정성(Fairness)</b> (개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 중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존중 노력	<b>6.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b> (개념)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도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b>7. 포용성(Inclusiveness)</b> (개념)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정신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b>8.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b> (개념)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2022-11-28
	8대 실천원칙(요약)											
	<b>1. 진정성(Authenticity)</b> (개념) 가상자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을 고려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 ②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	<b>2. 자율성(Autonomy)</b> (개념) 이용자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방식을 스스로 결정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참여·행동·상호작용방식 결정과정의 선택권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 않도록 노력										
	<b>3. 호혜성(Reciprocity)</b> (개념) 이용자간 정보와 디지털재화의 소통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행동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 주체 간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방식과 수단 지원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우호(협력)적 소통과 상호작용 실천 노력	<b>4.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b> (개념)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 자제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자제 노력										
	<b>5. 공정성(Fairness)</b> (개념)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에 차별없이 공정하게 접근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창작 과정 중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존중 노력	<b>6.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b> (개념) 개인식별정보, 생체정보, 활동정보 등 가상세계의 개인정보 범위를 인지, 최소수집 및 보호 노력 (역할) ①개발·운영자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도입,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b>7. 포용성(Inclusiveness)</b> (개념) 인종, 성별, 국적, 경제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정신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접근성 보장	<b>8.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b> (개념) 인류의 기본 가치(문화, 규범 등)가 보존되고 혁신과 번영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노력										

부처	내용	일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 마련 노력</p>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역할) ①개발·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운영방식 설정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p> </td> </tr> </table>	<p>(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 마련 노력</p>	<p>(역할) ①개발·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운영방식 설정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p>	
<p>(역할) ①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접근성 보장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적 문화 토대 마련 노력</p>	<p>(역할) ①개발·운영자는 메타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발·운영방식 설정 노력 ②이용(이해관계)자는 현재 메타버스의 미래 영향을 인지, 현재의 책임 있는 행동 필요</p>			
	<p>●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3~'27)」 수립</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국가연구시설장비 고도화계획('23-'27)(안)」을 심의·의결함</p> <p>고도화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중장기계획으로,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구축·확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전략, 중점과제 등을 담고 있음</p> <p>정부는 그간 연구개발의 필수 기반요소인 연구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 2차 고도화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장비도입심의 체계화, 과제 종료 후에도 장비 유지보수가 가능한 통합관리제 시행, 연구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 등 연구장비 투자·관리체계 확립과 활용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p> <p>* ZEUS(Zone for Equipment User Service,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p> <p>제3차 고도화계획에서는 이러한 1, 2차 고도화계획의 성과와 대내외 환경분석 및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 구축과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들을 도출하였음</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현장 실수요를 반영한 대형연구시설·장비 통합수요조사체계 마련</li> <li>② 기관별 연구시설·장비 관리계획 수립 → 우수기관 보상 실시</li> <li>③ 지역 거점연구시설 지정 및 거점 중심 공동활용 서비스 네트워크 조성</li> <li>④ 전문운영인력 유형·기준 마련 및 경력관리체계 구축</li> </ol>	<p>2022-11-29</p>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p>• <b>美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b></p> <p>산업통상자원부는 8개 기업, 유관 협회와 함께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p> <p>* (정부) 장관, 통상차관보, 통상정책국장, 에너지정책국장 등 (업계) 현대차, LGES, 삼성SDI, SK온, 포스코케미칼, 한화큐셀, CS윈드, SK머티리얼즈 (유관단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p> <p>금번 민관 합동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됨</p> <p>미국 IRA 관련 단기/중장기 대응으로는</p>	2022-11-29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3 846 403 1037">단기</td> <td data-bbox="403 846 1316 1037"> <p>① <b>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b></p> <p>*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美 정부와 협의중</li> <li>•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li> </ul> </td> </tr> <tr> <td data-bbox="323 1037 403 1182">중장기</td> <td data-bbox="403 1037 1316 1182"> <p>②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용 이외에도 <b>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b> 등</li> <li>• <b>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b></li> </ul> </td> </tr> <tr> <td data-bbox="323 1182 403 1373"></td> <td data-bbox="403 1182 1316 1373"> <p>①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내 정치지형 고려시 <b>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b>이라는 평가이나, 우리정부와 업계는 미 의회 <b>지도부와 핵심 의원</b> 대상으로 지속 설득 추진</li> <li>• 법개정에 필요시 <b>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b></li> </ul> </td> </tr> <tr> <td data-bbox="323 1373 403 1518"></td> <td data-bbox="403 1373 1316 1518"> <p>②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li> <li>• <b>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b></li> </ul> </td> </tr> <tr> <td data-bbox="323 1518 403 1664"></td> <td data-bbox="403 1518 1316 1664"> <p>③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최종조립 조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는 <b>다소 시일 소요 예상 → 충분한 준비 필요</b></li> </ul> </td> </tr> <tr> <td data-bbox="323 1664 403 1888"></td> <td data-bbox="403 1664 1316 1888"> <p>④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 수혜 최대화하도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美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 예상</b></li> <li>• 특히 <b>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b>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td> </tr> </table>		단기	<p>① <b>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b></p> <p>*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美 정부와 협의중</li> <li>•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li> </ul>	중장기	<p>②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용 이외에도 <b>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b> 등</li> <li>• <b>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b></li> </ul>		<p>①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내 정치지형 고려시 <b>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b>이라는 평가이나, 우리정부와 업계는 미 의회 <b>지도부와 핵심 의원</b> 대상으로 지속 설득 추진</li> <li>• 법개정에 필요시 <b>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b></li> </ul>		<p>②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li> <li>• <b>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b></li> </ul>		<p>③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최종조립 조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는 <b>다소 시일 소요 예상 → 충분한 준비 필요</b></li> </ul>
단기	<p>① <b>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b></p> <p>* 상업용 친환경차(렌트, 단기리스 등)는 북미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세제혜택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적용하도록 美 정부와 협의중</li> <li>• 우리 전기차 업계도 미국 수출시 상업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li> </ul>											
중장기	<p>② IRA 하위규정에 우리업계 이해관계 적극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업용 이외에도 <b>생산·투자세액공제 확대, 배터리 광물·부품요건 완화</b> 등</li> <li>• <b>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b></li> </ul>											
	<p>①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내 정치지형 고려시 <b>법 개정이 녹록치 않은 상황</b>이라는 평가이나, 우리정부와 업계는 미 의회 <b>지도부와 핵심 의원</b> 대상으로 지속 설득 추진</li> <li>• 법개정에 필요시 <b>EU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추진</b></li> </ul>											
	<p>② 미국내 계획된 전기차나 배터리 공장을 적기에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계 차원에서 북미 생산거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li> <li>• <b>IRA에서 부여하는 투자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b></li> </ul>											
	<p>③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 조달 노력 강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 최종조립 조향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업계가 IRA 요건에 맞는 배터리를 조달하는 데는 <b>다소 시일 소요 예상 → 충분한 준비 필요</b></li> </ul>											
	<p>④ IRA와 연관된 모든 업종에서 우리업계 수혜 최대화하도록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정에너지·기후 등 IRA 관련 美정부 지원규모가 10년간 약 500조원 예상</b></li> <li>• 특히 <b>배터리·태양광·풍력·원자력</b> 분야에서 우리 업계가 IRA를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li> </ul>											

부처	내용	일시																						
	<p>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對美 IRA 구체적 협의와 관련하여,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전기차 세액공제의 요건을 3년 유예)을 중심으로 美의회 아웃리치를 이어 나갈 계획임</p> <p>아울러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11/4 美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 등을 개최하여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하였으며, 12월초 통상교섭본부장 訪美 계기 美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p> <p>IRA 내 인센티브 주요 세액공제 조항으로는</p> <table border="1" data-bbox="325 808 1323 1570"> <thead> <tr> <th data-bbox="325 808 453 871">구분</th> <th data-bbox="453 808 1150 871">주요내용</th> <th data-bbox="1150 808 1323 871">수혜예상 주요기업</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5 871 453 994">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td> <td data-bbox="453 871 1150 994">리스, 렌트 등의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법인에게 차량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td> <td data-bbox="1150 871 1323 994">현대차</td> </tr> <tr> <td data-bbox="325 994 453 1305" rowspan="4">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td> <td data-bbox="453 994 1150 1081">배터리 미국내 셀 생산시 1kWh당 35불의 Tax Credit 제공 (배터리 모듈 생산시 10불의 Tax Credit 추가 제공)</td> <td data-bbox="1150 994 1323 1081">배터리 3社</td> </tr> <tr> <td data-bbox="453 1081 1150 1169">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sup>2</sup>, (폴리실리콘) 3\$/kg 등</td> <td data-bbox="1150 1081 1323 1169">한화큐셀</td> </tr> <tr> <td data-bbox="453 1169 1150 1218">풍력 (블레이드) 2.0¢/W, (나셀) 5.0¢/W, (타워) 3.0¢/W 등</td> <td data-bbox="1150 1169 1323 1218">CS윈드</td> </tr> <tr> <td data-bbox="453 1218 1150 1305">수소 수소 1kg 생산당 최대 3불 * 온실가스 배출량 0.45kgCO<sub>2</sub>eq./kgH<sub>2</sub> 이하</td> <td data-bbox="1150 1218 1323 1305">SK, 롯데 등</td> </tr> <tr> <td data-bbox="325 1305 453 1429">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td> <td data-bbox="453 1305 1150 1429">미국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수소 등 제조 시설을 설치 확장시 투자 금액의 6~30%에 해당하는 투자 세액공제 제공 (기본 6%에 임금 요건 및 수습직원 요건 충족시 최대 30%까지 확대)</td> <td data-bbox="1150 1305 1323 1429">현대차·배터리3社</td> </tr> <tr> <td data-bbox="325 1429 453 1570" rowspan="2">원전 세액 공제</td> <td data-bbox="453 1429 1150 1516">차세대 원전 발전·투자 세액공제: SMR 등은 상업운전 개시 이후 최소 10년간 \$25/MWh 또는 초기 투자금액(30%)에 세액공제 중 택일</td> <td data-bbox="1150 1429 1323 1516" rowspan="2">기자재 수출기업 등</td> </tr> <tr> <td data-bbox="453 1516 1150 1570">가동 원전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내용	수혜예상 주요기업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리스, 렌트 등의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법인에게 차량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현대차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배터리 미국내 셀 생산시 1kWh당 35불의 Tax Credit 제공 (배터리 모듈 생산시 10불의 Tax Credit 추가 제공)	배터리 3社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 <sup>2</sup> , (폴리실리콘) 3\$/kg 등	한화큐셀	풍력 (블레이드) 2.0¢/W, (나셀) 5.0¢/W, (타워) 3.0¢/W 등	CS윈드	수소 수소 1kg 생산당 최대 3불 * 온실가스 배출량 0.45kgCO <sub>2</sub> eq./kgH <sub>2</sub> 이하	SK, 롯데 등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미국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수소 등 제조 시설을 설치 확장시 투자 금액의 6~30%에 해당하는 투자 세액공제 제공 (기본 6%에 임금 요건 및 수습직원 요건 충족시 최대 30%까지 확대)	현대차·배터리3社	원전 세액 공제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 세액공제: SMR 등은 상업운전 개시 이후 최소 10년간 \$25/MWh 또는 초기 투자금액(30%)에 세액공제 중 택일	기자재 수출기업 등	가동 원전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	
구분	주요내용	수혜예상 주요기업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리스, 렌트 등의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납세법인에게 차량당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현대차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배터리 미국내 셀 생산시 1kWh당 35불의 Tax Credit 제공 (배터리 모듈 생산시 10불의 Tax Credit 추가 제공)	배터리 3社																						
	태양광 (모듈) 7¢/W, (셀) 4¢/W, (웨이퍼) 12\$/m <sup>2</sup> , (폴리실리콘) 3\$/kg 등	한화큐셀																						
	풍력 (블레이드) 2.0¢/W, (나셀) 5.0¢/W, (타워) 3.0¢/W 등	CS윈드																						
	수소 수소 1kg 생산당 최대 3불 * 온실가스 배출량 0.45kgCO <sub>2</sub> eq./kgH <sub>2</sub> 이하	SK, 롯데 등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미국내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수소 등 제조 시설을 설치 확장시 투자 금액의 6~30%에 해당하는 투자 세액공제 제공 (기본 6%에 임금 요건 및 수습직원 요건 충족시 최대 30%까지 확대)	현대차·배터리3社																						
원전 세액 공제	차세대 원전 발전·투자 세액공제: SMR 등은 상업운전 개시 이후 최소 10년간 \$25/MWh 또는 초기 투자금액(30%)에 세액공제 중 택일	기자재 수출기업 등																						
	가동 원전 생산 전력에 대해 최대 \$15/MWh 세액공제 혜택																							
	<p>• <b>한-EU 통상장관, 美 IRA 등 글로벌 통상 현안 논의</b></p> <p>산업통상자원부는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한-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0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美 IRA, WTO 개혁 등 주요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디지털 교역 원활화) 무역 관련 문서의 전자화 촉진 및 국경간 거래 원활화를 위한 단일 창구 마련 필요성 확인</p>	2022-11-30																						

부처	내용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및 지재권 보호 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 중요성 강조</li> <li>③ (소비자 신뢰)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및 높은 수준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성 확인</li> <li>④ (기업 신뢰) 소스코드 및 암호화 기술에 대한 부당한 공개 요구를 금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필요성 강조</li> <li>⑤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제3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조치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공조 중요성 확인</li> </ul>	
	<p><b>•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b></p> <p>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함</p> <p>핀테크·블록체인 업계는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노력을 공유하면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부처간 협력(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 필요</li> <li>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li> <li>③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li> <li>④ 신사업 진행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li> <li>⑤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 등</li> </ul>	2022-12-01

##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농림축산 식품부	<p>• <b>「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2.1. 시행, 다만 제24조2 및 별표 1의2의 규정은 12.11. 부터 시행 예정)</b></p> <p>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 등을 한 식품에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자에게 명하는 표시 중단·제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53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 및 법률 제18883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p> <p>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b>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표시 중단·제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39조제1항제2호, 별표1의2 신설, 별표2 제2호 신설)</b></p>	2022-11-29
산업통상 자원부	<p>• <b>「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2.1. 시행)</b></p> <p>* 다만, 제24조제1항제20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이스라엘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16항제13호 및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12항(캄보디아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6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의 변경 (제6조제1항 및 별표 1 제1호)</b></p> <p>-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품 등에 대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거래금액’을 과징금 부과 시의 기준이 되는 거래 금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여 조사개시 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p>	2022-11-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금액의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의 경우 종전에는 10억원 이하의 거래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억원 이하의 거래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과징금 부과기준을 변경함</li> <li>② <b>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등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징금의 부과를 통지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납부기한을 변경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의 기준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추어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함</li> </ul> </li> <li>③ <b>「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제24조제5항제5호, 같은 조 제12항 및 제24조의2제1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위원회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잠정자유무역협정 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내용의 입수 방법과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li> <li>-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재시행을 금지하고, 이스라엘을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대상 국가에 포함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1. 시행)</b></li> </ul> <p>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노후 발전시설의 공해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종전에는 공사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에 허가받은 발전설비와 유사한 종류의 발전설비로만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b>주요 발전설비인 터빈·보일러 및 발전기를 동시에 모두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종류의 발전설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제5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b></p>	2022-12-01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2.11.29. 시행)</b></li> </ul> <p>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b>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유*, 수소 등을 생산하는 열분해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별표3 제1호가목3, 별표3 제3호나목 4) 신설, 별표6 제10호)</b></p> <p>* 열분해유: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만든 것으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경유, 나프타 등 다양한 석유화학 원료·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제유</p>	2022-11-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b>「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2.11.29. 시행)</b></p> <p>※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별표 9 제3호가목7)가)·나)·마) 및 별표 1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31일</li> <li>2. 별표 9 제3호가목7)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li> </ol> <p>제2조(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량이 해당 호에 따른 날 이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공포한 날</li> <li>2.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023년 10월 1일</li> <li>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2024년 10월 1일</li> </ol> <p>제3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가목7)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p> <p>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의 완성을 위하여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011호, 2022. 11. 29. 공포·시행)됨</p> <p>이에 따라 열분해를 통한 재활용 가능유형 및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열분해시설의 설치·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자원순환보증금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에 1회용 컵을 추가하는 등 자원순환보증금 대상인 1회용 컵의 수집·운반 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고 유해성이 적은 왕겨 및 쌀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왕겨 및 쌀겨를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및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의 입력 의무대상인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 고도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에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9조제2항에 제4호의2 신설, 제15조의2제1항에 제8호 신설, 제17조의2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1항에 제6호의2 신설, 제38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호에 사목 신설, 제41조제2항제4호, 제66조제6항에 제10호 등)</p> <p>* 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것</p>	2022-11-29
	<p>• <b>「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2.11.29. 시행)</b></p> <p>불연물이 과다하게 혼입된 건설폐기물이 위탁업체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어 해당 시설의 운영효율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하는 폐기물의 불연물 함유량은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는 한편,</p>	2022-11-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의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b>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신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통과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진입로 및 계량시설을 통과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별표 1의2 제1호라목, 별표 1의2 제3호 바목 신설, 별표 2의3 제4호 신설, 별표 3 제2호가목9)가))</b></p>	
	<p>• <b>「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 (<a href="#">2022.12.2. 시행</a>)</p> <p>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p> <p>이에 따라, <b>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임차료,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보관 및 운반에 드는 비용,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 관리 및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처리지원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2조의3의 제목, 제12조의3의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항, 제12조의6의 제목 및 제1항, 제12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등)</b></p>	<p>2022-12-02</p>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법무부	<p>• <b>「민법 일부개정법률안」</b></p> <p>디지털기술 발전과 IT 인프라 확산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p> <p>디지털콘텐츠나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고 배타성이 없어서 통상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을 전제로 만들어진 민법의 계약 규정들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p> <p>이에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종합적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콘텐츠계약의 전범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디지털콘텐츠계약의 의의를 규정 (안 제733조의2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법문상 양자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디지털제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의 제공에 관한 제공자와 이용자 간 계약의 정의를 신설함</li> </ul> <p>② <b>제공자의 의무를 명시 (안 제733조의3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디지털제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디지털제품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명시함 (안 제733조의3 제1항)</li> <li>- 디지털제품의 경우 기존의 물건 또는 용역과는 다른 양태로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저장매체의 인도, 접근 및 다운로드(디지털콘텐츠), 접속 등(디지털서비스) 제공방식을 신설함 (안 제733조의3 제2항)</li> <li>- 제공자에게 디지털제품의 제공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약 또는 거래관념상 디지털제품의 기능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보완조치(업데이트)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안 제733조의3 제3항)</li> </ul> <p>③ <b>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별도 규정 (안 제733조의4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과 권리를 전제한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콘텐츠계약에 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디지털콘텐츠계약에 특유한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li> <li>- 디지털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하자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하자시정청구권)를 부여함 (안 제733조의4 제1항)</li> </ul>	2022-12-0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의 시정을 거절하거나, 하자의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제공자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대금감액청구권), 해제·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해제·해지권)를 이용자에게 부여함 (안 제733조의4 제2항)</li> <li>- 디지털제품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타 전형계약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의 중첩에 관한 규정을 둠 (안 제733조의4 제3항, 제4항)</li> </ul> <p><b>④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당사자 간 법률관계 규정 (안 제733조의5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제품이 지닌 비배타성, 복제 및 사후 활용이 용이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계약이 종료된 후에 문제될 수 있는 법률적 관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li> <li>- 이에 이용자는 계약 종료 이후 디지털제품을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명문화 (안 제733조의5 제1항)</li> <li>- 제공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제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제공자의 디지털제품 제작·활용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 (안 제733조의5 제2항)</li> </ul> <p><b>⑤ 디지털제품에 관한 제공자의 변경권 신설 (안 제733조의6)</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제품의 내용이나 제공방식이 유동적인 생성 및 유통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li> <li>- 일정한 요건 하에 제공자가 디지털제품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리(변경권)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의 대응수단으로서 해지권을 규정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12/1(목)~2023/1/10(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법무부(법무심의관실)</a>로 제출</p>	
고용 노동부	<p>• <b>「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맞게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 (안 제49조제1항)</li> <li>②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안 제49조제2항)</li> </ul>	2022-11-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 (안 제59조제2항제2호)</p> <p>④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 (안 제63조제1항)</p> <p>※ 의견 제시기간 : 11/28(월)~2023/1/9(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고용노동부(디지털노동대응TF)</a>로 제출</p>	
	<p>• <b>「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b></p> <p>2022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추가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반 벌칙조항 추가 (안 제27조의2)</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여부 등 추가 (안 제23조제1항제7의2호)</p> <p>③ 미회수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변경 (안 제23조의3제3항)</p> <p>※ 의견 제시기간 : 11/28(월)~12/8(목)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a>로 제출</p>	2022-11-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p>• <b>「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p> <p>현행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거주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공급가 수준으로 양도하도록 함에 따라 공급받으려는 수요가 부족하고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로 제한함에 따라 지방공사 등은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p> <p>이에 따라 양호한 입지에서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보다는 높고 주변시세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p> <p>① <b>사업주체의 공급 여력을 높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제81조제1항에 제3호 신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 해당 지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11/30(수)~2023/1/10(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a>로 제출</p>	2022-11-30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b>「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b></p> <p>「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등 처분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한(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36호, 2022.9.30.)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적합판정 취소 등 세부 처분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별표 5의2의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 제4호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GMP 기록을 누락한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미한 사항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시정명령 처분을 하도록 정함 (안 제4조제2항 제5호 신설, 제48조의 2)</b></p> <p>※ 의견 제시기간 : 12/1(목)~12/2(금)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a>로 제출</p>	2022-12-0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특허청	<p>• <b>「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b></p> <p>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8817호, 2022. 2. 3. 공포, 2023. 2. 4. 시행)됨</p> <p>이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의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동 의정서 규칙의 용어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대리인 선임 인정 확대 (안 제2조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출원 절차 중 위임장 첨부 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확대함</li> </ul> <p>② <b>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절차 마련 (안 제25조제1항, 제51조의2, 별지 제5호서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정(보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재심사 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를 재심사 청구 신청서의 반려 사유로 규정함</li> </ul> <p>③ <b>출원서류 등의 즉시 반려 대상 정비 (안 제25조제2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법 시행규칙」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규정의 일치를 통해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려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함</li> </ul> <p>④ <b>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안 제82조, 제91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이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규칙」으로 개정되고, 마드리드 의정서 신규가입국을 반영하여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및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li> </ul> <p>※ 의견 제시기간 : 11/30(수)~2023/1/9(월)까지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a>로 제출</p>	2022-11-30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p>• <b>「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b></p> <p>현행 배당 제도는 일반적으로 3월에 주총을 열어 전년 12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배당액을 결정함.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한 뒤 배당금 규모 결정까지 3개월 이상 걸리며, 해당 시기 동안 소액 주주 구성도 상당한 변동이 발생함</p> <p>더불어 배당금을 높이더라도 작년 말 주주들에게 지급되기에 배당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유도해 우리나라 증시가 저평가 받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의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됨</p> <p>단적으로 2021년 배당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배당성향은 26.7%로, 미국(41%), 영국(56.4%), 프랑스(45.4%) 등에 크게 뒤지며, 세계 25개국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최하위 수준임</p> <p>이에 배당결의일 이후 일정한 날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명시하여 개인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높이고, 국제적 공통 규범에 보다 부합하며, 적극적 배당 유도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정상화와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62조)</p>	2022-11-25
	<p>•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p> <p>그러나 동 법률은 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p> <p>특히 시시각각 환경이 바뀌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용·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p> <p>이에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3항 신설)</p>	2022-11-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재 위원회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문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거주자가 지출하는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반려동물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p>	2022-11-30
교육 위원회	<p>• 「<b>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p> <p>징계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 등 학교 내부자인 위원과 해당학교의 교원이나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는 외부위원으로 나뉘는데, 외부위원 제도는 징계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가볍지 않게 하려고 도입한 것임. 따라서 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이 징계권자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p> <p>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에 관계 있는 자를 징계위원에서 배제하는 징계위원 배척규정이 필수적이거나, 현행법은 이를 달리 정한 바 없음</p> <p>이에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관계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자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함</p> <p>또한,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고 해촉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의 선임 및 해촉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p>	2022-11-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 및 해촉하도록 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인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2조제3항 및 제62조의2)</p> <p>②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전체 징계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62조제4항)</p>	
	<p>• <b>「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2인)」</b></p> <p>현행법에서는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에 부정가입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대리점 및 위탁점 등에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바, 본인 확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제2항제6호 신설)</p>	2022-11-28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p>• <b>「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p> <p>그러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이 법정 의무로 신설된 것이 2004년으로서 현재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번호를 안내받는 이용자는 사실상 거의 없고, 관공서나 은행 및 병원 등 생활전화번호 역시 대부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어 번호안내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임</p> <p>특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p> <p>이에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려는 것임 (안 제60조제1항)</p>	2022-11-3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행정안전위원회	<p>• <b>「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등 10인)」</b></p> <p>그간 학교법인이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영리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의과대학병원 부속토지 및 그밖에 영리목적의 토지에 대하여도 분리과세 세제지원을 받았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제1호 개정으로 2022년부터 교육용토지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됨</p> <p>이에 따라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소유하여야 하는 의과대학병원 부속토지 등이 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의과대학병원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p> <p>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과 학생의 장학사업을 위한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특례”를 통한 세제지원이 되도록 의과대학병원용토지 등 필수적 수익성 기본재산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특례를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과세시 분리과세를 종전과 같이 적용하고자 함</p> <p>이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8항 신설)</p> <p>또한 필수적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적용 시 중복감면 배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80조 단서)</p>	2022-11-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 <b>「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b></p> <p>게임접근성은 장애인 등을 위해 불편한 신체 유형에 맞춰 게임 컨트롤러 등을 개조해 게임을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방법임.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표준화한다면 게임 이용 격차가 해소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p> <p>그러나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은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p> <p>이에 장애인 등 웹·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조 등)</p>	2022-11-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b>「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기관, 다른 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p> <p>그런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뒤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입주계약 등을 위반한 기업은 계약해지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분양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 당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 신설)</p>	2022-11-25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b>「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4인)」</b></p> <p>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임</p> <p>특히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경제안보와 국민의 생활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임</p> <p>이에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시책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관계기관을 대통령 소속기관까지 확대함 (안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p> <p>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산하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신설을 명시함 (안 제8조제4항)</p>	2022-11-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③ 긴급수급안정화조정의 범위를 공급망안정품목까지 확대하고, 이행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p> <p>④ 국가 경제·안보 등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12조의2 신설)</p> <p>⑤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및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를 신설함 (안 제21조의2 신설)</p> <p>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3조의2 신설)</p>	
	<p>• <b>「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p> <p>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안 제33조의2제4항)</p>	2022-11-28
	<p>• <b>「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은 국내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발굴 및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한 인증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837개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임</p>	2022-11-3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이에 현행법상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2항)</p> <p>•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 등 13인)</u>」</p> <p>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5항의 단서규정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시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자 회사를 설립하여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용지를 공급받고 이를 모기업인 국내기업에 재공급 하는 등 편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신설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15일 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16조제6항제3호로 개정되었음</p> <p>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효율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지·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부지·시설의 제공이 불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음</p> <p>이에 “국·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문 중 특수관계인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안 제16조제6항 제3호)</p>	2022-12-01
보건복지위원회	<p>•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u>」</p> <p>최근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p> <p>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p>	2022-11-2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li> </ul> <p>② <b>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안 제10조의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li> </ul> <p>③ <b>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안 제12조의3)</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li> </ul> <p>④ <b>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안 제23조 및 제24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조합·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분·조합할 수 없도록 함</li> </ul>	
	<p>• <b>「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2인)」</b></p> <p>현재 제약산업의 육성, 지원 및 국제적 경쟁력 구축과 관련한 법률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지난 2011년 제정(2011.3.30.) 시행하고 있는 바,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구개발에서 제품개발까지 일관된 정책이 산업육성의 핵심이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음</p> <p>이와 관련,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2022-12-01</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임</p> <p>이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 등)</p>	
환경노동위원회	<p>• <b>「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여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지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임</p> <p>이에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 15 신설)</p> <p>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제3항 신설)</p> <p>아울러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4항)</p>	2022-11-2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u>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1인)</u>」</p> <p>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 시간선택권이 중시되면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음</p> <p>그러나 현행법상 유연근무제도들은 전체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임</p> <p>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 단위 및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직원들만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p> <p>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적 업무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시행령으로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있는데 산업의 발달로 전문업종과 관련 업무가 다양해지고 수시로 증가함에 따라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큼</p> <p>현행법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 산업현장에서는 급작스런 주문 증가나 업무증가 시 1주 12시간 내에서 업무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연장근로제도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p> <p>또한, 근로시간의 길이와 일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와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의 능력 구현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p> <p>주 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p> <p>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p>	2022-12-0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아울러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모두 근로자 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1조제2항 및 제51조의2제1항)</li> <li>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제1항)</li> <li>③ 연장근로를 현행 1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 또는 연 625시간 내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5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li> <li>④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53조제3항 및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li> <li>⑤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안 제58조제3항)</li> <li>⑥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종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안 제63조제4호 및 제5호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b>」</li> </ul> <p>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기존에 폐기물 감축에 집중되었던 친환경 정책도 폐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또는 재제조라는 순환경제의 차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p> <p>특히, 폐자원에 창조적 디자인 등을 가미해 고부가가치 소비재나 다른 용도의 창작품으로 전환하는 ‘재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는 재활용의 하위개념이나, 부가가치 창출과 자원 절약 측면에서 재활용보다 한 단계 진화된 개념이기도 함. 이러한 재활용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크나 현재 법적 근거는 불분명한 실정임</p>	2022-12-0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이에 <b>현행법에 따라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새활용을 명시함으로써 ‘새활용(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안 제31조제1항제8호)</b></p>	
국토교통 위원회	<p>• <b>「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b></p> <p>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관·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p> <p>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는 아군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드론만 확인 가능하고 타 기관(민·관·산·학·연 등) 및 적 드론의 확인은 제한됨</p> <p>이에 <b>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 등에 상황발생시 타 기관의 드론을 적대세력으로 오인하여 격추하거나, 드론 테러(공격)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 지체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b></p> <p>이에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하여 운용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드론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기 위함 (안 제17조제4항)</p>	2022-11-29
	<p>• <b>「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b></p> <p>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이 경우 렌터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p> <p>이와 관련해 2016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변경해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차 기준을 기존 동종에서 동급으로 변경한 바 있음</p> <p>하지만 이로 인해 사고 차량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의 종류가 각각 다르고,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p>	2022-11-3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또한 보험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 지급을 지연하여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p> <p>한편 정비업계도 손해보험사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비요금을 전국에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p> <p><b>현재 손해보험사와 소비자 및 렌터카 사업자 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b></p> <p><b>자동차보험정비협회처럼 대차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의3 신설)</b></p>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2/8(목)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안건심의	
	12/9(금) 14:00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 안건심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12/5(월)	「팩트북」 제98호 발간 - 식량안보	
	12/6(수)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1호 발간 - 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	
	12/7(수)	「World & Law」 2022-23호 발간 - ○○회사, 연봉이 얼마라고?	
	12/8(목)	「현안, 외국에선?’ 제49호 발간 -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랑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	
예산정책처	12/9(금)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발간	
	12/9(금)	「NABO 재정추계&세제이슈」 제21호 발간	
입법조사처	12/5(월)	「NARS 입법·정책」 발간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별첨1] 제400회 국회(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법사위	12/5(월) 10:00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2/6(화) 10:00	법안1소위	- 고유법 심사
	12/7(수) 10:00	전체회의	- 고유법 의결, 타위법 심사
정무위	12/5(월) 15: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기재위	12/5(월)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의결
외통위	12/5(월) 13:30	청원심사소위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 (여기구 의원 소개)
	12/5(월) 14:00	전체회의	- 법안 등 의결, 현안 보고
문체위	12/6(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12/6(화) 14:00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 심사
	12/7(수) 14:00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 심사
	12/8(목)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농해수위	12/8(목) 10:00	농림법안소위	- 법안 심사
복지위	12/6(화) 09:00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2/7(수) 10:00	법안1소위	- 법안 심사
	12/9(금) 09: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입법공청회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환노위	12/6(화) 10:00	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12/7(수) 10:00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국토위	12/9(금)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정치개혁특위	12/8(목) 10:00	정치관계법 개선소위	- 법안 심사
연금특위	12/6(화) 14:00	전체회의	-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5(월) 10:00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최형두·김회재·이정문·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5(월) 14:00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	윤주경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5(월) 14:00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구자근·이용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6(화) 07:30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양이원영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12/6(화) 13:30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전략 포럼	양금희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12/6(화) 15:30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 COP27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한정애, 유의동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2/7(수) 10:00	KTX타고 강남가자 토론회 - 수서발 新중앙선 원주 연결, 지방화 시대를 열자	엄태영, 이종배 의원실, 국 회입법조사처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2/7(수) 10:00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	서병수 의원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도서관 강당
12/8(목) 15:00	윤석열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	이은주·우원식 의원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12/9(금) 10:00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알바연대	의원회관 2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63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11/30(수)	<b>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제18호)」 발간</b> - 일률적 취업제한의 위헌성과 입법 및 법제적 시사점	
국회도서관	11/29(화)	<b>「최신 외국입법정보」 제210호 발간</b> - 임금 투명성 관련 미국 입법례	
입법조사처	11/28(월)	<b>「이슈와 논점」 발간</b> - 금융이용자의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권리 행사 현황 및 향후 과제	

###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8(월) 10:00	<b>ESG 친환경 운송수단 법제화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b>	김학용·김병욱·정희용· 안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8(월) 13:30	<b>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b> - COP27 성과와 우리의 대응	정희용 의원실, COP27 대통령 특사단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9(화) 14:00	<b>노원형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b> - 신속한 재건축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우원식·김성환· 고용진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30(수) 10:00	<b>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b>	이인영·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30(수) 15:00	<b>지방정부 역량 강화 연속 토론회 2</b> <b>[다운로드] 파일 1, 파일 2</b> - 지역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역량 강화 국회 토론회	이주환·전용기 의원실, 기후변화센터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2/1(목) 10:00	<b>주니어 ROTC 프로그램 발전 및 법제화를 위한 방안</b>	서병수·이헌승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